



"기획은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보도자료

제 공 일 : 2012. 3. 14.
제 공 자 : 농림수산물부 식량산업과
과 장 : 김 기 훈
사무관 : 이 범 섭
전 화 : 500-1996
쪽 수 : 4P
별첨자료 : 있음(6P)

이 자료는 2012년 3월 15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확대

- 한미 FTA 관련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4개기종 면세유 추가 공급 -

《 주 요 내 용 》

◇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확대

- 추가 기종 :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VAN)형식은 제외),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 로더의 지원범위를 현행 자체중량 2톤 미만에서 4톤 미만으로 확대
 - *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 (현행) 트랙터 등 39개 기종 → (개정) 42개 기종

◇ 연간 공급한도량

-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연간 379ℓ 정량 공급
 - *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기준은 농작업용(농기계 운반, 농작업장까지 이동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반영
- 그 밖의 기종은 현행과 같이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건표 기준으로 공급
 - * 연간공급 배정량은 (시간당 연료소모량 × 연간사용시간)와 영농규모, 작목별 설정온도 및 가축사육두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

◇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로더(2톤이상 4톤미만) 관리방안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가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에 한하며, 관할 지역농협에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
 - 신고증 의무 부착 운행 및 연간 공급량 제한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사료

배합기(火食用)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 현행 자체중량 2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 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급한다고 밝혔다.

□ 따라서, 현재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3개 기종의 추가와 함께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나게 되고,

○ 농업인들은 연간 981억원(농기계 대수 약 37만 3천대)의 추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농업용 화물자동차 368,000대,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1,000대,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3,500대,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500대

◆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기종 (2012. 3. 15)

- 추 가 :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 범위 확대 : 농업용 로더, (현행) 자체중량 2톤 미만 → (개정) 4톤 미만
 - *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 (현행) 트랙터 등 39개 기종 → (개정) 42개 기종

□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자동차 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VAN)형 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제외된다.

□ 또한, 농업용 로더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자체중량 2톤 미만에 대해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 조사료 운반·축분 처리 등 농작업시 2톤 이상 로더의 사용 증가와 안전사고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체중량 4톤 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 로더 : 무한케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농촌진흥청의 농작업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 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ℓ를 공급한다.

○ 이는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발표('12.1.2)시 농업 전용 사용량에 대해서만 면세유를 공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농작업 이용현황을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면세유 공급량을 결정하게 되었다.

* 농업 전용 : 농가와 농작업장 사이의 농기계·농자재·수확물·축분 운반 등

○ 농업용 굴삭기와 사료배합기는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공급조건표에 의거하여 면세유를 배정하게 된다.

* 농업용 화물자동차 배정량(ℓ) : 연간 379ℓ 정량 배정

* 대당 평균 배정량(ℓ) : 로더 1,200~1,500, 굴삭기 181, 사료배합기 1,000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연간 공급량 제한 등 농업 전용 사용·관리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먼저, 면세유 공급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하며,

○ 농업인이 해당기종의 면세유 신청시 지역농협은 공급대상 기종임을 확인하고, 기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증(스티커)을 발부하며 농업인은 이 신고증을 차량에 항상 부착 운행해야 한다.

○ 해당기종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에서 별도로 전산관리하고, 면세유 배정시기도 월별로 정량 배정하며, 월간 당겨사용은 금지한다.

□ 또한,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에 대해서는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역농협을 통해 해당기종의 보유현황과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 타 기종은 농림특례규정에 의거 2년(홀수년도)마다 신고

○ 이와 함께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가산세 추징과 면세유 감량 배정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공급하는 농업용 면세유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추가기종 포함)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 (액체형태의 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15. <삭 제>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비닐하우스용 · 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것만 해당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삭 제>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삭 제>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세척기
31. <삭 제>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삭 제>
38. 농 선
39. 잔디깎는기계 (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40. 녹차채엽기
41. 버섯재배소독기
42. 농업용무인헬리콥터
43. 농업용 로더(4톤 미만)
44. 농업용 동력제초기
45. 농업용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맨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46.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47.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참고 2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현황(제조업체 사양)

	차종명	포터Ⅱ (소형)
	출 력	94 ~ 123 hp
	연 료	디젤, LPG
	연 비	9.5 ~ 10.9 km
	배기량	2,476 ~ 2,497 cc
	가 격	984 ~ 1,574 만원
	승차인원	3 ~ 6 인승
	차종명	봉고Ⅲ (소형)
	출 력	133 ~ 159 hp
	연 료	디젤, LPG
	연 비	8.3 ~ 12.3 km
	배기량	2,359 ~ 2,497 cc
	가 격	1,352 ~ 1,878 만원
	승차인원	3 ~ 6 인승
	차종명	라보 (경형)
	출 력	43 hp
	연 료	LPG
	연 비	12.2 ~ 12.3 km
	배기량	796 cc
	가 격	711 ~ 788 만원
	승차인원	2 인승

※ 세렉스, 포터 등 상기 형태의 화물자동차는 모두 해당

참고 3 추가 대상기종 현황

□ 로더(2톤이상 4톤미만)

사 전	구 분	농업용 로더(4톤 미만)
	기능 및 용도	•양계, 양돈 등 축산분뇨의 수거 및 이동 - 퇴비 및 사료 공급, 축분 적재 및 상하차, 농작업시 각종 중량물의 관리
	가 격	28,500~55,000천원

□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사 전	구 분	농용굴삭기(1톤미만)
	기능 및 용도	•과수농가의 골파기 및 이랑작업, 낙농축산의 분뇨처리 등 - 굴삭 및 평탄작업 등이 가능
	가 격	1,500 ~ 2,500만원

□ 사료배합기(火食사료용)

사 전	구 분	사료배합기(火食사료용)
	기능 및 용도	•벼짚, 콩, 보리 등 조사료를 끓여 사료 제조 - 최근 구제역 등의 여파로 사료배합기(火食사료용)가 각광을 받고 있음.
	가 격	약 31,000천원

참고 4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신고증 발급요령

1.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신고증 형식

① 농업용 로더 (2톤 이상 4톤 미만)

등록번호	○○○○	11cm
관리번호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		
26cm		

② 농업용 화물자동차 (1톤 이하)

차량번호	○○○○	5cm
관리번호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		
8.5cm		

- 색상 : 바탕색(노란색), 글자색(파란색)
- 글씨 : 견고딕체, 굵게, 45p(로더), 20p(차량)
- 부착위치 : (로더) 운전석을 기준으로 좌측 범지지대 측면
(차량) 운전석을 기준으로 앞유리 좌측 아래
- 관리번호 : 기종, 관할농협 코드, 등록년도, 일련번호 등으로 지정

○○ - ○○○○○○○ - ○○ ○○○○
① ② ③ ④

- * ① 기종, ② 지역농협 환코드, ③ 등록년도 뒷 2자리, ④ 일련번호
- * ① 기종 :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43, 농업용 화물자동차 45

2. 업무처리 절차

- 신고(농민) → 확인(지역농협) → 신고증 발급 및 부착(지역농협) → 면세유 공급(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 면세유 사용(농민)

3. 신고증 발급 요령

- 신고증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제작 배포
- 지역농협 담당자는 신고 기종을 반드시 확인 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신고증을 지정 위치에 직접 부착

4. 신고증 재발급 요령

-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는 신고증을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 분실, 훼손 등으로 신고증 재발급을 요할 경우 재발급 사유서 징구
- 지역농협 담당자는 신고증 최초 발급시와 동일하게 신고 기종을 반드시 확인 후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기존 관리번호 폐기)하고 신고증을 지정 위치에 직접 부착

5.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기종 신고 요령

-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고자 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취득·양도, 사망, 이농 등의 변동 사유 발생시 30일 이내에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
- 중고 거래 등의 변동신고 사유 발생시 양수인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지 않을 경우 양도인이 신고
- 이때, 양수인 관할 지역조합장은 양도인 관할 지역조합장에게 변동신고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 면세유의 중복 배정을 방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미행자가 면세유를 공급받은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하여 2년간 공급중단 및 감면세액 추징